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52
------	-----

2007. 9. 4.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년 6월 26일 상정, 심사보류)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년 9월 4일 상정,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 영 만)

가.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 기존의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운행경유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사항은 제2장에 그대로 유지하며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신설하고자 하는 저공해의무화는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인 대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기존 자율신청방식의 저공해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단지, 대기오염부하량이 많은 노후 대형경유차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저공해조치를 의무화 하려고 하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우선 1단계로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노후경유차는 2008.12월까지,
- 2.5톤 이상 3.5톤 미만 경유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공해조치를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임.
-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이나 심각한 노후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권고하거나 의무화유예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라.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공해사업은

-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대부분을 국·시비로 지원해줄 뿐 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의 3년간 면제 등 선진외국도시에 비해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 일반시민과 관련협회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회 등을 실시하여,
- 건설기계의 저공해의무화 유예 등 건설기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대호)

가. 제1장 총칙

- 본 개정조례안은 “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과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에 대한 내용이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하고 있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를 제명변경과 함께 경유자동차 저

공해화의 내용을 추가하는 전부개정 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안 제1조(목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한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배출저감장치의 부착등 저공해 촉진과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적용) 에서도 “저공해조치”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고,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은 총칙사항이며 이는 조례전체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임.

나. 제2장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 : 안 제4조(적용범위)~제14조(사후관리 등)

- 제2장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조례 제2조~제12조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관련 업무가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심의회 의 구성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짐.

다.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 안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제19조(재정적 지원 등)

- 안 제15조(저공해화 조치 의무대상자동차의 종류)
 -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저공해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되어 왔으나,
 -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것임.
 - 그러나,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차량관리를 하고 있어 시행규칙상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는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의무화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차량에 대하여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함.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규제와 함께, 등록 후 7년 이상이 경과한 경유자동차(건설기계 제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의무 대상 자동차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매연저감장치의 기술개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높은 ‘건설기계’가 제외된 것은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수준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과 “경유차 저공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장(총칙) 제1조~제3조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과,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차량관리를 성실하게 하여 매연을 적게 배출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의무강제라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용상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끝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경유차량의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율 및 사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차원의 추가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및 본 조례에 대한 존폐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중 설치목적과 관련하여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을 최초 등록일 기준 7년이상된 차량중에서 매연농도가 10%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제한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해 조례의 시행일을 조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관련하여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보완
-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을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차량중 매연농도를 10%이상 배출하는 차량으로만 제한
- 조례에 대한 시민홍보 및 계도를 위해 조례 시행기일을 2008년 1월 1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